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3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민홍철・김진표・김병주

안규백 · 한정애 · 김병기

인재근 · 송영길 · 진선미

이병훈 · 김수흥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수사 중에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연기만을 규정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불가능함.

이에 따라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행방을</u>	③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대통
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	
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u><신 설></u>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u><신 설></u>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
	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u><신 설></u>	3.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
	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